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754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4월 03일

발 의 자: 박춘선, 김길영, 김영철,
김재진,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박상혁, 소영철,
신동원, 이병운, 이숙자,
이영실, 이종태, 장태용,
최민규, 최유희, 홍국표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를 정의하고, 시장이 산림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시 유아숲지도사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산림교육전문가 정의(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등) (안 제2조제3호 신설)
- 나. 유아숲 운영계획에 유아숲지도사 배치, 교육 등 활용방안 포함(안 제4조제5호 신설)
- 다. 산림교육전문가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산림교육” 이란”을 ““산림교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교육” 이란”을 “교육”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유아숲체험원” 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유아동네숲터”란”을 ““유아동네숲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체험시설” 이란”을 “체험시설”이란”으로 한다.

3.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아숲지도사 배치, 교육 등 활용방안

제6조제2항제1호 중 “5천㎡ 이상으로 한다”를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천㎡ 미만이며”를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300㎡ 이상으로 한다”를 “3백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산림교육전문가의 활용 등) 시장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p> <p><신 설></p> <p>3.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p> <p>4. “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산림교육”이란 ----- ----- ----- ----- -----.</p> <p>3.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p> <p>4. ----- 교육”이란 ----- ----- ----- ----- -----.</p> <p>5.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p>

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
2조제1항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
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숲체험을 할 수 있
는 공간을 말한다.

5. “유아동네숲터”란 별도의 인공
시설 설치없이 유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자연그대로의 공간
에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접하며 숲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을 말한다.

6. “유아숲 체험시설”이란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
해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오감
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도록 제
공하는 시설로써, 유아숲체험원
과 유아동네숲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
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
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시
행) ① (생략)

제1항-----

-----.

6. “유아동네숲터”란 -----

-----.

7. ----- 체험시설”이란 -----

-----.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
장”이라 한다)-----

-----.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시
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제6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아숲 체험시설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 : 5천㎡ 이상으로 한다.

2. 유아동네숲터 : 5천㎡미만이며, 최소 면적은 300㎡ 이상으로 한다.

③ (생략)

<신설>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유아숲지도사 배치, 교육 등 활용방안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6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천제곱미터 이상

2. ----- 5천제곱미터 미만----- 3백제곱미터 이상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산림교육전문가의 활용 등)

시장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제7조 ~ 제9조 (생략)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여
야 한다.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시행) 제5호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4년도 산림교육 활성화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4조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	1,140,894

자료: 2024 서울시 예산서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